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
----------	----

제출연월일 : 2006년 11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민선4기 도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과 전담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621명 ⇒ 2,629명 (증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65명 ⇒ 1,472명 (증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5명 ⇒ 66명 (증1명)
 -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 : 2,621명 ⇒ 2,629명 (증8명)
 - 본 청 : 972명 ⇒ 981명 (증9명)
 - 의회사무처 : 65명 ⇒ 66명 (증1명)
 - 직속기관 : 1,291명 ⇒ 1,296명 (증5명)
 - 사업소 : 293명 ⇒ 286명 (감7명)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참고자료 :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62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472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047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6명

제3조(직급별 정원)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한시정원) 도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직급정원) 본청의 정원 4급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사업소의 정원 3급 1명, 4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 종 별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 업 소
총정원		2,629	981	66	1,296	286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계	1,076	815	40	67	154
	2-3급	1		1		
	3급	9	7		1	1
	3-4급	1	1			
	4급	60	40	7	5	8
	5급	213	171	7	14	21
	6급	357	275	13	19	50
	7급	377	280	12	24	61
	8급	57	40		4	13
일반·반정	소계	4	3	1		
	5급	2	1	1		
	6급	1	1			
	7급	1	1			
별정직	소계	18	10	2	5	1
	1급	1	1			
	5급	2	2			
	6급	10	3	1	5	1
	7급	2	2			
	8급	2	1	1		
연구직	소계	140	1		110	29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19	1		92	26
지도직	소계	25			25	
	지도관	6			6	
	지도사	19			19	
소방직	소계	1,047	59		988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8	4		54	
	소방위	67	6		61	
	소방장	142	11		131	
	소방교	324	24		300	
	소방사	417	2		415	
교 원	소계	44			44	
	학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2			32	
	조교	11			11	
기능직	소계	274	92	23	57	102
	6급	9	6	1	1	1
	7급	30	10	4	4	12
	8급	54	17	1	4	32
	9급	87	23	7	30	27
	10급	94	36	10	18	30

[별표 2]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30	일반직 : 4급1, 5급6, 6급9, 7급7, 8급6 기능직 : 10급1		
본 청	4	일반직 : 5급2, 6급1, 7급1	2007. 6. 30.	혁신지원 및 고객만족업무
	2	일반직 : 6급1, 7급1	2007. 12. 31.	사업별예산업무
	4	일반직 : 5급1, 6급2, 7급1	2008. 12. 31	역사규명업무
	1	일반직 : 6급1	2008. 12. 31.	과거사 업무
	3	일반직 : 7급1, 8급1 기능직 : 10급1	2008. 12. 31.	복식부기업무
	1	일반직 : 7급1	2008. 12. 31.	동학관련업무
	15	일반직 : 4급1, 5급3, 6급4, 7급2, 8급5	2008. 10. 30.	혁신·기업도시 관련업무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 (생략)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의 총수 : 2,621명 ⇒ 2,629명(증8명)
 - 3급1, 4급3, 5급4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660,122	
○ 인건비	471,114	
- 기본급	262,238	※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3급(1명) : 20호봉 기준 - 4급(3명) : 20호봉 기준 - 5급(4명) : 18호봉 기준
- 수 당	81,294	
- 정액급식비	14,040	
- 교통보조비	16,560	
- 명절휴가비	30,098	
- 가계지원비	50,164	
- 연가보상비	16,720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 물건비	102,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36,600	
- 직급보조비	38,40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 이전경비	87,008	
- 성과상여금	10,032	
- 연금부담금	66,458	
- 국민건강보험금	10,518	
- 연금지급금	-	